

[사 건 명] 행심 2015-8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중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2014. 12. 29.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청구를 이행하라.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5. 01. 08. ‘청구인이 ■■군청 ○○○○ 계장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이 왜 ■■군수 ◇◇◇에 대한 행정소송 서류에 첨부되었는지 피청구인이 아는지 여부, ●○○, ♣♣♣이 ◇◇중학교의 직장 내 불륜사건으로 친자확인 유전자감식 실태조사내역을 요청한 내역서 및 그 내역을 발송한 내역서’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였고, 청구인에게 2015. 03. 03. 정보부존재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2015. 02. 16. 피청구인의 정보 부존재 통지에 불복하여 상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를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접수하였고,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날 우리위원회로 청구 건을 이송하였으며, 2015. 02. 17. 우리위원회에서 접수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청구인이 ■■■군청 ○○○○ 계장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이 왜 ■■■군수 ◇◇◇에 대한 행정소송 서류에 첨부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중학교에서도 불륜사건이 있었는지 사실 확인 하고자 하며, ■■■군청 공무원들에게 정의를 가르치고자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Ⅲ.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청구인은 2015. 01. 08.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기관에서는 2015. 01. 14. 정보공개에 대한 답변을 ■■■교육지원청으로 송부하였으며, 청구인에게 2015. 03. 03. 정보부존재 결정통보 하였다.

Ⅳ.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15. 01. 08.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5. 03. 0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부존재 결정을 통보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에 대한 판단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2)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에 대해 2015. 03. 03. 정보부존재 결정을 완료하였으므로, 의무이행 심판으로서의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V.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